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4
----------	-----

2023년 4월 19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3월 28일, 박성연 의원 외 2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3년 4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성연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된 사항과 「소방기본법」 등이 개편된 사항 등을 적시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(1)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방기본법」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.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조례안은,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로 분리하여 제·개정(2022.12.1.)됨과 동시에 「소방기본법」도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
- 인용 조문 및 명칭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[표]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현황 ([붙임 1]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)

구분	조례명	개정내용
1	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2	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3	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4	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5	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 - 한글 맞춤법에 맞는 띄어쓰기 개정
6	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7	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8	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9	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	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

10	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</li> <li>-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 사항 반영 (화재경계지구 → 화재예방강화지구, 소방특별조사 → 화재안전조사)</li> </ul>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이는 기존의 인용 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‘화재예방’ 분야와 ‘소방시설’ 분야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규정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법령에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화재예방법)」을 분리하여 제정하고,
- 현행 법률의 제명을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소방시설법)」로 변경하는 한편, 이에 따른 「소방기본법」도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에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.
-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조례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하여 시행상의 혼란과 각각의 입법절차로 인한 행정낭비·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제처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는 방식을 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2018)’에서 제시하고 있는바, 본 조례안과 같이 일괄 정비 방식이 적절하다 사료됨.

[붙임 1] 각 조례별 신구조문대비표

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소방시설”이란 「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다중이용시설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,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도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	<p>제7조(화재 및 재난방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**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(이하 “포상금 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판매시설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)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“불법행위”라 한다)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</p>	<p>제2조(포상금 등 지급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-----</p>



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·차단(잠금을 포함한다) 등을 하는 행위

3. (생략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① (생략)

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,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접수 및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별지 제3호서식 -----  
----- . -----  
-----  
----- .

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소방안전지도의 구축)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. 1. (생략) 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소방대상물”이라 한다.)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3. ~ 11. (생략)	제4조(소방안전지도의 구축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3. ~ 11. (현행과 같음)



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지하보행로의 채광·환기 및 피난·안전에 관한 설비는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,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10조(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**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p> <p>① 소방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p>	<p>제2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)</p> <p>①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24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불 피움 등의 신고)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</p>	<p>제3조(불 피움 등의 신고) ① 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----- ----- -----</p>

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·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(전화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(팩스를 포함한다)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·장소는 소방대상물(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관계지역(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소방대상물 중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한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제6호-----  
-----  
-----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1호-----  
-----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2호-----.

제4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법 제52조제2항제1호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화재경계지구”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3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)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)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<u>소방특별조사</u>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<u>화재경계지구</u>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”란 「<u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3. ----- 「<u>소방기본법</u>」 제2조제3호-----.</p> <p>제4조(<u>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</u>) ----- 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-----.</p> <p>제5조(<u>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</u>) ① ----- <u>법 제18조제3항</u>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----- ----- ----- <u>화재안전조사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법 제18조제5항</u>----- <u>화재예방강화지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
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0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김규남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 
김춘곤, 김태수, 남궁역,  
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 
박영한, 박칠성, 서상열,  
송경택, 신복자, 유정인,  
윤기섭, 윤영희, 이민석,  
이봉준, 이은림, 임춘대,  
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된 사항과 「소방기본법」 등이 개편된 사항 등을 적시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며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방기본법」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, 「소방시설  
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, 「소방기본법」

##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전부개정 이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소방기본법」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
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”를 “「소방시설  
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
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한 조  
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·교육 지원에 관  
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  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1항”을 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 
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 
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”을  
“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  
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  
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
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3에 따라”를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2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소방기본법」”을 “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”을 “법 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①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

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19조제2항제6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19조제2항제6호”로,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로,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법 제56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52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3호”를 “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2.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화재경계지구의 지정)”을“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등)”을“(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13조제3항”을 “법 제

18조제3항”으로,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, “소방특별조사”를 “화재안전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3조제5항”을 “법 제18조제5항”으로, “화재경계지구”를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